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정책 종합정보지입니다.

2024년
11월호

이 달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 | | | | |
|---|---|---|--|
|  중소기업부 |  고용노동부 |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KIBO 기술보증기금 |  KDIT 신용보증기금 |  (재)경남테크노파크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Gyeongnam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
|  경남신용보증재단
Gyeongnam Credit Guarantee Foundation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  창원상공회의소 |
|  KBIZ 중소기업중앙회 |  RIPC
경남지식재산센터 |  GyeongNam Investment & Business Agency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 |  중소기업24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본 자료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목 차

1. 중소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2024년 제2차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기업 지원 공고	1
②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3
③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4
④ 비즈니스지원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6
⑤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6
⑥ 미국 FDA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교육 안내	7
⑦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국적선사 HMM 협업)	8
⑧ 수출컨소시엄 사업	9
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9
⑩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체결 지원사업	11

2.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12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13
③ 고용유지지원금(유급)	14
④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6
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16
⑥ 고령자고용지원금	18
⑦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9
⑧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21
⑨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22
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4
⑪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25
⑫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26
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안내	27

3.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①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28
② 내일채움공제	29
③ 기업인력 애로센터	30

4.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① 2024년 8~9월 직무역량향상연수 과정 안내	31
② 부산경남연수원 시설 대관 안내	3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	34
②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36

6. 기술보증기금 부울경지역본부

① 탄소가치평가보증	37
------------	----

목 차

7.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 ① 「혁신벤처기업 특례보증」 시행 안내 39
- ② 「녹색벤처기업 특례보증」 시행 안내 40

8.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① 2024 CORN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41
- ② 2024 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입주모집 42

9. 경남신용보증재단

- ① 경남형 강한 소공인·소기업 성장지원 특별보증 43
- ② 서민물가 안정화 및 장수기업 특별보증 44

10.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 ①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실시 45
- ② 수출 초보기업 지원강화 46
- ③ 수출이행자금 기존 보증 건 무감액 연장 실시 46
- ④ 방산 협력사를 위한 수출파트너보증제도 운영 47
- ⑤ 환변동보험제도 운영 48
- ⑥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제도 운영 49
- ⑦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제도 운영 50
- ⑧ 온라인 단기수출보험(중소 PLUS+) 다이렉트 플러스제도 운영 51
- ⑨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제도 운영 52
- ⑩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53

11.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 ① OK FTA 컨설팅 54

12.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① 2024 차세대 CEO 스쿨 입문과정 교육 56
- ② 2024 차세대 CEO 스쿨 성장과정 교육 57
- ③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안내 57

13.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 ①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8
- ② e 경남몰 운영 60
- ③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e 경남몰) 지원사업 61
- ④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사업 62
- ⑤ 경남 항공산업 이종구조 개선 지원사업 6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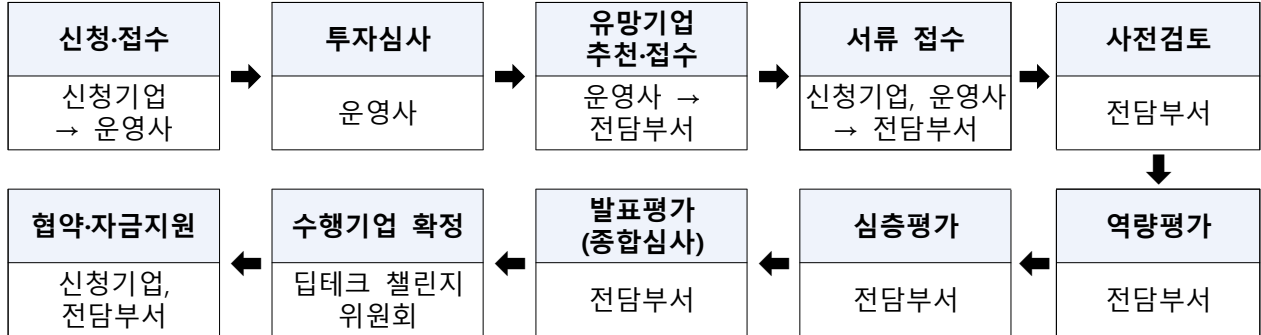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

2024년 제2차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기업 지원 공고

- **(사업목적)** 역량과 의지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 주도의 대규모 R&D프로젝트 추진
- **(지원규모)** 10개 이내(제1차 DCP 기업 지원계획 공고의 선정규모와 통합)
- **(지원조건)**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기업 지원계획 공고일 이후,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23.8월 기준 19개 컨소시엄) 또는 해외 VC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투자 협약 포함) 받은 기업(운영사 추천 필요)
 - * 운영사 컨소시엄 외 VC 등 공동투자 허용
 -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전문인력 및 지원역량을 갖춘 VC와 연구개발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 * 최종 선정 기업의 출연R&D 및 매칭투자 협약 체결 일정은 R&D매칭펀드 투자에 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예정,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출연R&D : 수행기업당 최대 3년(36개월), 36억원
 - *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
 - 매칭투자(모태펀드) : 수행기업당 최대 40억원 이내
 - 매칭투자는 운영사가 투자하는 방식과 동일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며,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 투자(공동투자분 포함)에 최대 2배수 매칭
 - 정부 지분투자금 50% 이상 R&D사용 의무화, 나머지는 양산자금, 판로, 운영비 등 허용(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사용내역 확인)
 - 지분투자 방식 :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①신주(보통주, 우선주), CB, BW 투자, ②공동 매각 원칙
 - 지분투자 시기 :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와 동일 라운드로 투자 원칙

- **(추진절차)** 반드시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를 통해 기업 지원계획 공고 이후 투자 또는 투자 확약을 거쳐 전담부서에 신청·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기업, (전담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청기한)** 2024. 8. 21.(수) ~ 11. 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세부내용)** [2024년 제2차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기업 지원사업 \(Click\)](#)
- **(문 의 처)**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운영 본부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성장전략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R&D 평가, 유의사항 등	이훈희 PM(02-2280-0443) 정중채 PM(02-2280-0444)
		민간투자연계 관련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권순일 팀장(02-2156-2457) 이제호 과장(02-2156-2163)
		민간투자 조건 적합 여부 등	김수정 팀장(02-2280-0425) 이동재 대리(02-2280-0426)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tipa.or.kr/>

2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24년 5억원, 500개사 내외
- (예산집행)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전문가
- (지원내용)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관련 법률지원, 1개사 당 연간 1백만원까지 지원(자문비를 변호사에 지급)
 -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사업광고 → 신청접수 → 서비스 이용 → 정산

구분	사업 광고	신청접수	서비스 이용	점검 및 정산
주체	중소벤처 기업부	k-startup.go.kr	창업기업 등	창업진흥원/ 전문가
일정	'24.4월	연중 상시	(국내)~'24.10.11 (국외)연중상시	서비스 종료시

법률 자문서비스 분야

주 업무분야	서비스 내용
기업법무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주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등 회사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 지원
계약법 관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검토 및 작성
지식재산권(IP) 보호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자문
규제 준수	산업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적 문제에 대응
노동법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 갈등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노동법 분야의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소송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 대응
투자 및 자금 조달	투자자와의 협상,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 작성 및 투자 라운드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규제개혁 및 이슈 관리	창업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 및 법률적 조연과 대응

- (문의처) 국번 1357 / 창업진흥원 양하리 044-410-1746

3**「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 (사업목적)**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
- (지원규모)** 80억원, 최대 10,000개사
- (지원내용)**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 * 온라인쇼핑몰 입점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 등(붙임1 참조)
- (신청자격)**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24년 선정된 기업으로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 개별안내 예정)
 - ② 신규 신청 소상공인으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영세 소상공인
 -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각 플랫폼 매출사실을 입증(증빙자료 참조)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제외대상)** 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제출서류)** 판판대로 기존 선정업체는 별도 제출 불필요, 신규 신청 소상공인만 해당
 - 각 플랫폼 매출사실 입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위메프·티몬) 판매자 페이지의 5~8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 (인터파크·AK몰) 판매자 페이지의 7~9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신청 사업자가 피해 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 (신청기간) 2024. 8. 28.(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판판대로 홈페이지(www.fanfandaero.kr)에서 온라인 신청

· 판판대로 기지원(참여) 업체

☞ ① 판판대로 로그인 → ② 사업신청 → ③ 상품선택 → ④ 신청완료

· 판판대로 미지원(미참여) 업체

☞ ① 판판대로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 ④ 사업 신청 → ⑤ 상품선택 → ⑥ 추가 제출서류 등록 → ⑦ 신청완료

□ (문의처) 온라인유통센터 온라이커머스팀(02-6678-9452, 9453, 9459)

붙임 1

플랫폼별 지원 내용 (가나다 순)

구분	플랫폼	정산주기	지원내용
1	그립	월 4회 정산 (7, 12, 20,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광고구좌 지원 등
2	네이버쇼핑	구매확정 후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비즈쿠폰(광고비) 지급 등
3	도매꾹	배송완료 후 최소 2일 ~ 최대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제조 상품 직매입 지원
4	롯데온	구매확정 후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셀러머니(광고비) 지급 등
5	우체국 쇼핑몰	월 3회 (10일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기획전 홍보지원 (앱푸시 등)
6	쿠팡 (로켓배송)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용관 상품노출 및 할인쿠폰 지원
7	11번가	구매확정 후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셀러포인트(광고비) 지급 등
8	G마켓·옥션	구매확정 후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e머니(광고비) 지급 등
9	H몰	월 3회 (10일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및 할인쿠폰 지원 광고구좌 지원

* 쿠팡·H몰의 경우 직매입·종합몰 상품검수 절차가 있으며, 미통과 사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플랫폼에 따라 일부 지원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4

비즈니스지원단 애로상담 및 현장클리닉

- **(사업개요)** 경영·기술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창업·벤처전문가, 마케팅·수출입 전문가 등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상시 상담·해결해 드리는 “전문가 자문서비스”
- **(지원대상)**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이 다름
 - 상담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각종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자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상담 : 비즈니스지원단(12개 분야별 33명 전문가)이 기업의 경영·기술 애로를 무료상담 지원(전화 및 경남청 방문상담)
 - 현장클리닉 :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은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단기간(평균 3일)에 문제 해결 지원
- **(지원비용)** 상담 무료, 현장클리닉 1일 35만원(정부 80%, 기업 20%)
- **(신청방법)**
 - 상담 : 전화(055-268-2546~8, 2594) 또는 방문(경남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1층 고객지원실)
 - 현장클리닉 : 홈페이지에서(<http://www.smes.go.kr/bizlink>) 신청
- **(문의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창업 주무관(055-268-2594)

5

기업 규제·애로 상담 및 해소 지원

- **(지원내용)**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 수시 상담 및 접수
 - 일반적인 애로사항은 유선 또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처(기관 등)로 규제개선 요구
- **(신청방법)**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Click\)](#)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sujiny119@korea.kr)로 제출

6 미국 FDA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교육 안내

□ 추진목적

- 최근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24.7.1.)에 따라 국내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의 규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 교육개요

- 과 정 명 : 미국 FDA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 일 시 : '24. 11. 6.(수) 13:00~17:00 (4시간)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603호
- 참석대상 : 미국으로化妆품을 수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 주요내용 : 미국 FDA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주요내용, 기존 FFDCA* 의 차이점 등 인증전반에 대한 교육

* **FFDCA**(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주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함)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mes.go.kr/globalcert/>

□ 세부일정

일자	시간	교육내용	강사
11.06 (수)	12:30~13:00	교육장 입실, QR코드 입실체크(입장)	KTR
	13:00~17:00	미국 FDA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KTR
	종료후 10분 이내	교육장 퇴실, QR코드 퇴실체크(퇴장)	KTR

- 문의처 : KTR 교육컨설팅센터 김수연 연구원
(☎02-2164-0148, suyun7722@ktr.or.kr)

7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국적선사 HMM 협업)

* 2024년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4.2.14)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적선사(HMM)가 협업하여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전용 선복공간을 지원

< HMM(주) 중소기업 전용 선복 운영(안) >

- **항차당 북미 서안 50TEU, 동안 25TEU, 북유럽 50TEU, 서 지중해 50TEU를 중소화주 물량으로 배정**

구 분	항로명	항 로	중소화주 물량
미주 서안	PSX	상해-광양-부산-LA-오클랜드	50TEU
미주 동안	EC1	부산-뉴욕-노퍽-찰스턴-사바나	25TEU
북유럽	FE4	부산-상해-안티안-콜롬보-로테르담-함부르크-안트워프	50TEU
서지중해	FIM	(OP1) 부산-광양-상해-닝보-웨코우-싱가폴-포트켈랑-India Main port-발렌시아-제노아-피라우스	50TEU
		(OP2) 부산-상해-닝보-발렌시아-바르셀로나-제노아-피라우스	

* 해운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선박일정 및 중소화주 배정 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전 고비즈코리아 및 HM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요

- **(지원대상)** 한국발(發) 북미·유럽·지중해 수출물량이 있는 ①수출 중소기업 또는 ②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된 포워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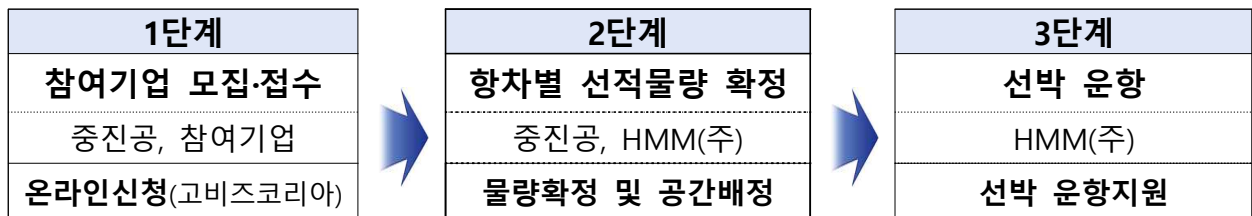
- **(지원기간)** '24. 2. 13. ~ '24. 12. 31.

* 국제 해운시장 동향 및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중진공-HMM(주) 북미·유럽·지중해항 중소기업 수출 전용선복

-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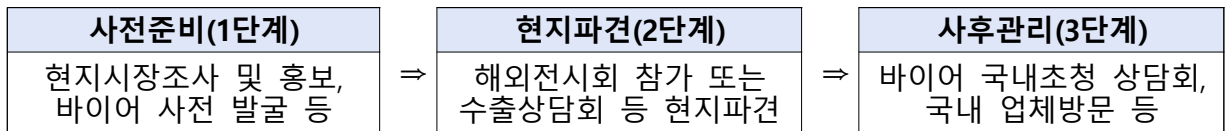
* 선착순으로 신청모집, 중소기업 여부, 제출서류 등 검토하여 중진공, HMM 공동 선정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상운송 HELP DESK (☎070-4349-5773)

8 수출컨소시엄 사업

*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24.1.12)

- (사업목적)**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시장 개척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등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촉진
- (지원규모)** ('24년) 158.5억원, 전국 약 1,300개사 지원
- (지원대상)**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및 민간 전문기업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우대사항 :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동행축제 참여기업, 환변동보험 참여기업 등
- (지원내용)** 개별 컨소시엄의 ①사전 시장조사, ②현지파견, ③사후관리 3단계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공통비용 70% 지원



- (신청접수)** 개별 컨소시엄 행사 일정에 따라 연중 수시모집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별 지원기업 모집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팀 (☎02-2124-3291~6)

9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 2024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24.3.27)

- (사업목적)** 세계 주요 교역거점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설치·운영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 관련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
 - * ①사무공간 제공, ②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전시·상담회, 인증 등), ③현지정착 지원 서비스(멘토링,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 자문)

□ **(운영현황)** 13개국 21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중

* 입주기업 모집은 이 중 20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광저우GBC 제외)

<입주기업 모집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현황>

구 분	미국(4개소)				유럽(2개소)		아시아(6개소)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호치민	하노이	방콕	뉴델리	알마티
독립실	16	20	10	9	15	8	18	15	15	10	14	7
공유좌석	5	12	8	32	8	8	8	12	6	9	45	6

구 분	중국(4개소)				남미(2개소)		중동(2개소)		합 계 (13개국, 20개소)
	베이징	상하이	충칭	선전	멕시코	산티아고	두바이	리야드	
독립실	17	22	8	10	9	8	15	10	256실
공유좌석	8	14	4	6	2	6	18	45	262석

* 신청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입주기업 선정 (예시) 사우디 리야드는 딥-테크(Deep Tech)기업 우선 선정 등

□ **(지원내용)**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필요한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 오피스, 회의실, 제품홍보관, 촬영 스튜디오, 상담회장 등)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거점별 다양한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기술교류, 물류, 인증 등)
-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운영(현지화 멘토링, 글로벌비즈니스지원단의 법률, 회계, 노무 등 자문)

□ **(신청기간/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연중 상시)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사업소개 > 온라인 입주 신청하기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055-751-9685, 9674~5)

- 현지관련 문의 : 해외 거점별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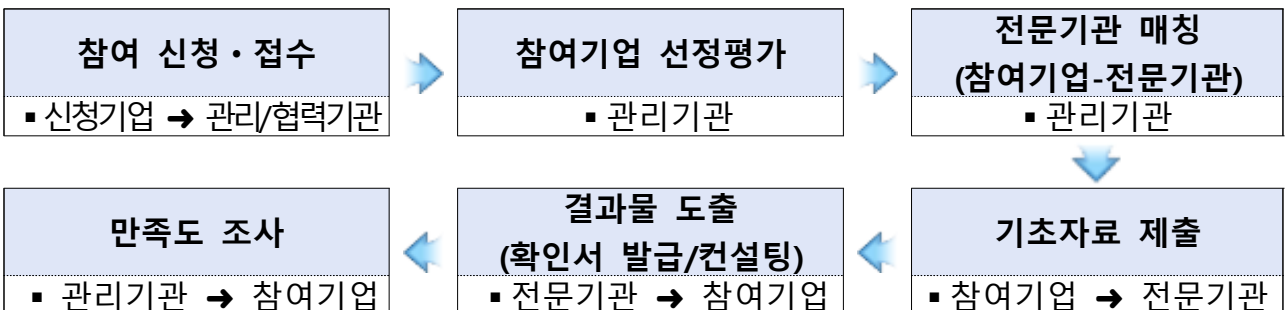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지역별 연락처

10 |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체결 지원사업

- (사업개요)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비중 확인 및 연동 약정 맞춤형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총 10억원, 전국 1,000개사 내외 (지원분야별 건당 최대 100만원, 정부지원 100%)
- (지원내용)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 (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 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등 연동 법정기재사항 관련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 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 ·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신청기한) 2024. 4. 25.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 서류 제출(pis@win-win.or.kr)
- (선정절차)



- (세부내용)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체결 지원사업 공고문 보기\(Click\)](#)
- (문의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055-268-258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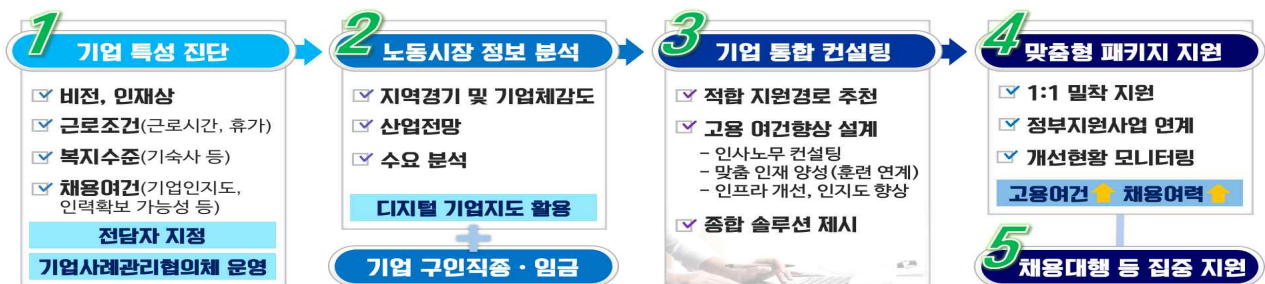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1

기업도약보장패키지

- **(사업개요)** 기업의 여건 및 특성을 진단하고, 고용여건 개선부터 맞춤형 채용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창원시 관내 ①근로조건·조직문화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②근로조건은 양호하나 인지도가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한 기업, ③신속한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④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맞춤 연계가 필요한 기업
- **(지원내용)**
 - (적극적 진단·컨설팅) 기업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진단
 - * 기업전담자 지정하여 찾아가는 진단컨설팅 서비스 제공, 애로사항 경청 후 해소방안 마련
 - (맞춤형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부터 대·내외 지원정책 연계까지 일대일 밀착케어 제공
 - * 고용여건 개선·맞춤형 채용지원 등을 위한 지원정책 발굴→유관기관 연계·협업 종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단계별 지원내용 >



- **(신청기한)** 상시접수
- **(신청방법)** 유선·방문 신청(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온·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forms.gle/5FSDnUkJmTFu9HPK6>
 - * 서면 신청서: 창원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알림'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창원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055-239-0945, 0926, 3543)

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사업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신청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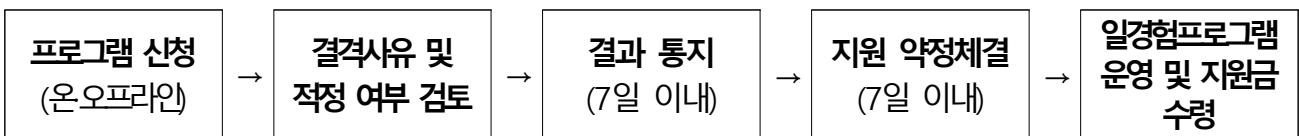
* (지원제외) 10인 이상 기업이더라도 소비·향락업, 인력공급업·파견업, 임금체불·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내실있는 일경험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 **(지원내용)**

유형	지원기간	기업지원 금액	참여한도
훈련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월 • 1일 4~8시간 * 취업관련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수당) 1인당 1개월 최대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
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일 • 1일 3~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수당) 1인당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

* 일경험 참여자는 현장실습생(수련생) 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참여자에 대해 재해보험을 가입 (4대보험 미가입)하며, 참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지급(기업부담 없음)

- **(참여절차)**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온라인 신청,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처)**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239-5372)

마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259-1575)

3 고용유지지원금(유급)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기준달

-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추세

*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현금, 수출금액 합산(국세청 증빙자료 제출)

□ (지원요건)

○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의미

- ①휴업 : 고용유지 조치일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총 근로시간이 20% 초과 단축
- ②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수당

- ①휴업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 평균임금의 70%이상 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

**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 ②휴직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금액 지급

□ (지원내용)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및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특별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1일 7만원 (연 180일)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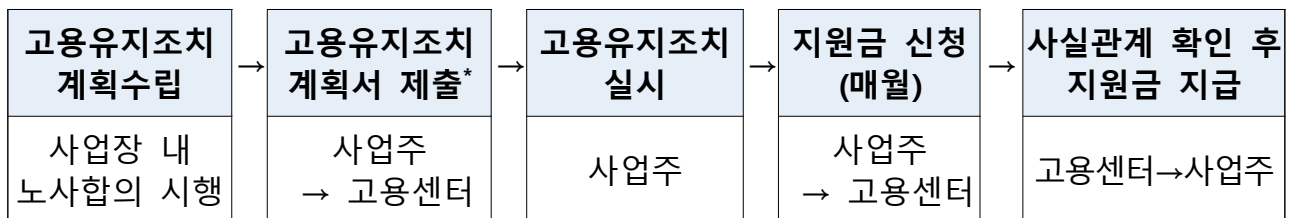
*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 기간동안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지원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 1개월간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 감원방지기간 내 폐업할 경우 해당월의 지원금 부지급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 ② 계획 신고 당시 해고 예고된 자 및 퇴직 예정자
 - ③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④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거친족, 등기이사(감사 포함)
 - ⑤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한 자
 - ⑥ 당해 사업장 입사(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⑦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예술인 및 단기예술인
 - ⑧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단기)노무 제공자

□ (세부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시행공고(Click)

□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4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사업개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려금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 단,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 단,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지원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장려금 심사·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	---	-----------------------------	---	---------------------	---	---------------------------
- **(참여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5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사업개요)**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년 고용 촉진 및 고용연장 도모
- **(지원요건)** 정년을 시행 중인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①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재고용)
 - 재고용의 경우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일률적 재고용이 원칙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원(월 30만원)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 * 단,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인 이하인 경우는 3명
 - (지원주기) 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 3년
- **(지원제외)**
 - 2019년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입사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 **(지원절차)** ①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업주) ⇨ ② 지원금 신청(1년 이내, 분기 단위) ⇨ ③ 장려금 검토·지급(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6

고령자고용지원금

- **(사업개요)** 급격한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고령자 수 증가)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 **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 ~ 2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지원내용)**
 - (지원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 30만원”을 지원금 최초 지급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최대 한도 30명)
 - ※ 월평균 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 (지원제외) 사업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자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사업개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본인의 필요에 의해(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근로자 요건) ① 근속기간 6개월 이상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③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단축제도)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 (근태관리) 단축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 출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등록하는 경우 지원불가
 -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임신 사유는 2주이상)
 - (지급제한) ①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②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합하여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20만원 지급
 - * 사업주 보전액: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시간비례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
 -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급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지원
 - *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한하여 지원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3명, 최대 한도 30명)
- (지원금 산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 산정,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 지원
- (지원 주기) 3개월 단위

- (지원절차) ① 전환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② 전환(단축)근로자 발생(근태관리)및 임금 지급 ⇨ ③ 온라인 지원금 신청(3개월단위, 사업주) ⇨ ④ 지원요건 검토 및 지급(고용센터)

□ (세부내용)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시행공고(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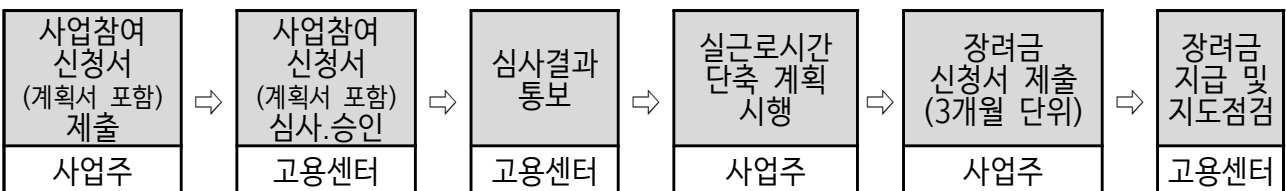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사업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방식) 공모형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관리방안, 연차제도 활성화방안 등), 향후 지속 방안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㉞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㉟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출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 등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 근로자 각각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하는 것이 아님
⇒ 일감나누기(work sharing) 등을 통해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문 의 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9

일 ·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 **(사업개요)** 유연근무제* 활용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유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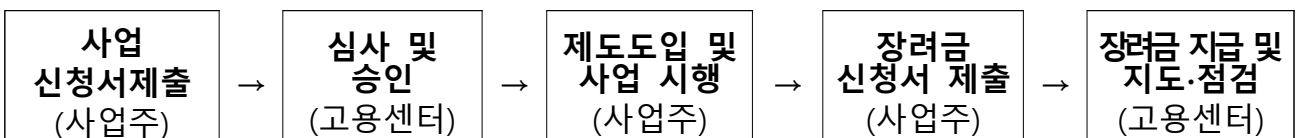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② 제도도입 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③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 ④ 재택·원격 근무일,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에 연장 근무가 없을 것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간 최대 360만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시차출퇴근제	10만원	20만원	24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최대 70명 지원 (모든 유형 합산)**

**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

- **(지원절차) <공모형>**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1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에 따라 구직 등록을 한 자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요건)**
 -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붙임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조
 -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 **(지원내용)**
 - 신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주기)** 고용한 날부터 6개월마다 지급(월할 지급하지 않음)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를 지원(10인미만 3명)
 - **(지원제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소속 (全)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등

- **(지원절차)**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사업주) ⇨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③ 장려금 신청(6월 단위, 사업주) ⇨ ④ 지원요건 검토 및 지급(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 **(사업개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육아휴직지원금
 - 육아휴직기간 월 30만원
 - 특례* 적용시 월 200만원(첫 3개월에 한함)
 - * 만12개월 미만의 자녀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월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 * 사업장 최초~3번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 (지원제외)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자
- **(신청기한)**
 - (제척기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창원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참고

- **(사업개요)**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단,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한 기간
 - (지원수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 한도
 - * 1개월지급액 최대 80만원, 인수인계기간중 1개월 지급액 최대 120만원
 - (지원요건)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제도 종료 후 원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지급제한) 감원방지기간* 준수
 - * 대체인력채용일 기준으로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제외)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자
- **(신청기한)**
 - (제척기간)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5-239-0960)
[창원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참고

- **(사업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육아기 단축 활성화 여건 조성(2024.7.1. 신설)
- **(지원대상 및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25시간 이하)
 -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지원내용)** 업무분담자 지정·금전적 지원기간 동안,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고용24 사이트 또는 창구, 우편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 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 * 초격차·신산업 분야
 - 지역주력산업
- 뿌리산업, 뿌리기술
- 소재·부품·장비산업

* 경남 지역주력산업 :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지역주축산업),
 경남 지역 미래신산업 : 소형모듈형원자로(지역 단독형), 수소 저장·운송(지역협력형)

-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 이자 부담 완화 및 정책자금 재원 한계 보완을 위해 이차보전 지속 공급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 : '24.3.25~5.31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지원목적	지원규모
혁신창업사업화	창업 및 특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19,958
신시장진출지원 마감	수출 중소기업 육성	4,174
신성장기반 마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17,250
재도약지원 마감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5,318
긴급경영안정 마감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1,500
밸류체인안정화 마감	단기 생산자금 공급 및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375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세부내용)**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Click\)](#)
- **(문의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2 | 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청년이 매월 일정액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지급
- **(가입대상)**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나이, 재직기간 무관)
- **(가입조건)**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5년
 - (적립금액)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 「기업:인력 = 2:1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지급이율) 연 복리(분기별 변동금리,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게시)
- **(사업절차)**

가입상담	→ 공제청약 (온라인 또는 방문)	→ 가입승인 (중진공)
공제금 지급 (만기 시)	← 계약 체결 (1회 납부 시 체결)	← 공제부금 납입 (기업·인력)
-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www.sbcplan.co.kr)에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
-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

3 | 기업인력애로센터

- (사업개요)** 구인구직, 직무역량 향상, 맞춤형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인력제도 개선, 정보제공 등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인력양성사업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에 등록된 구인기업의 인력매칭, 제도 개선,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을 제공하는 ONE-STOP 지원체계

구 분	주요 내용
청년구인구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대상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인력양성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시 매칭
직무역량향상	- 중소기업연수원, 고용부 HRD-Net 등 직업훈련기관 및 민간교육기관과 연계
맞춤인력양성	-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산학맞춤인력양성사업, 계약학과 등과 연계
근무환경개선	- 기업진단,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근무환경 종합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인력제도개선	- 법규, 제도 등 규제사항을 중진공 인력지원처를 통해 대정부 건의
정보 제공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력지원 시책 연계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신청 및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 (job.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Click)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1899-3001)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1

2024년 11월 직무역량향상연수 과정 안내

- (사업개요)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의 신기술, 현장실무능력 등 전문 역량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임직원
- (지원내용) 기술, 정책분야 등 다양한 교육영역, 교육방식의 연수과정 제공

【 '24년 11월 직무역량향상연수(집합연수) 일정 】

구분	과정명	연수비	기간
품질	ISO통합(품질/IATF16949, 환경, 안전) 내부심사원 양성	429,000원	11.5.~11.8.
디지털 신산업 및 생산 기술	인공지능(AI) 개념 이해 및 활용	무료	11.4~11.5.
	[공통]PLC 통합 제어 실무(서보모터+HM+통신네트워크+협동로봇)	무료	11.13~11.15.

【 '24년 10월 직무역량향상연수(웨비나-실시간 온라인연수) 일정 】

과정명	세부내용	일정
[웨비나]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이해하기	- 스마트공장 핵심기술과 서비스 - 스마트공장을 위한 데이터 수집	10.29.(화) 13:00~17:00(4H)
[웨비나] 차세대 스마트공장 트렌드 및 기술동향	- 차세대 스마트공장 기술동향 - 5G 통신기술과 스마트공장 융합	10.30.(수) 13:00~17:00(4H)

- (신청방법)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 (<https://ssup.kosmes.or.kr>) 온라인 신청

칭

- (할인제도)** 연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대상 및 절차	할인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수도권이외지역)	30~50
신규과정	30
내일채움가입자, 인재육성형 기업, 여성기업 등 정책연계	30~50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협약기간 내)	30~50

- * CEO명품아카데미 과정은 할인가준 적용에서 제외
- * 연수비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세부내용)**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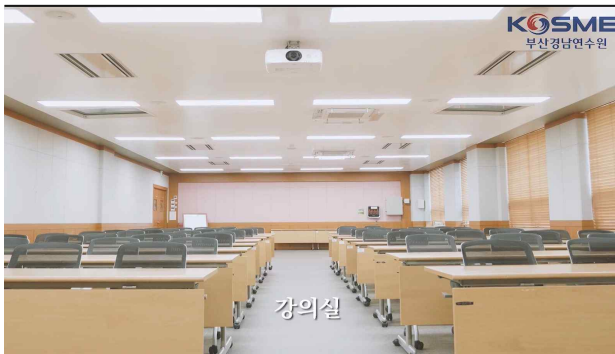
- (문 의 처)** 부산경남연수원 신기술연수팀(055-548-8045~6)

2 부산경남연수원 시설 대관 안내

□ (대관 개요) 워크숍, 창립식 등 행사진행 시 활용 가능한 숙박시설, 강의시설, 편의시설 민간 개방

□ (이용가능 시설)

시설 구분	개방 시설	수용인원	사용료
강의시설	강의실	15~50명	기본 3시간 : 10만원 추가 1시간당 : 2만원
	대강당	120명	기본 3시간 : 30만원 추가 1시간당 : 6만원
숙박시설	기숙사	2인실(58개)	4만원
		단체실(5인 내외, 2개)	10만원
기타 편의시설	실내체육관, 식당 등		별도문의



강의실

강의실



대강당

대강당



2인실

기숙사



실내체육관

□ (문의처) 부산경남연수원 시설대여 담당자(055-548-8022)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

- (사업개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붙임1)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2024. 9. 2.(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세부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2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사업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접속 > 제휴교육 클릭 > 신용회복위원회 클릭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교육 이수
 -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 지원제외: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용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 불가
- **(용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용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 금리인하(0.5%p)제도 도입: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용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 **(신청방법)**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4. 7. 31.(수) 10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세부내용)**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문 참조\(Click!\)](#)
- **(문의처)** 국번없이 1357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1 탄소가치평가보증

□ (취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의 일환으로서 기획재정부 위탁 기후대응보증사업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기여기업 보증지원 제도 마련
-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하는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선별·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경영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자체 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유형별 대상채무 및 평가방법 차등화

[탄소감축유형별 탄소감축분야 및 정의]

탄소감축유형	탄소감축분야	정 의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태양광 · 바이오 · 연료전지 · 수력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기업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폐기물 · 풍력 ·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③ 자체감축기업	· 시설도입 · 수송수단도입 · 연료전환 · 기타	시설도입(교체), 연료전환, 수송수단 도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감축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④ 외부감축기업	· 완제품 · 소재(원료) · 부품 · 기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 및 제품·부품·소재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신기술사업자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100억원 한도(기금 타계정 보증금액, 신보 보증금액, 보증재단 보증금액 포함)
- (운전자금 가산) 탄소가치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지원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금액)	+	탄소가치 산출액	=	보증가능금액
----------------------------------	---	----------	---	--------

□ **(우대사항)** 기업유형, 평가유형 등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 **(장기·고액보증)** 본 보증 지원건에 대해서는 장기·고액보증 감축 대상 및 보증일부 해지 대상에서 제외, 보증료 가산 적용 배제
- **(보증금액 산정 특례)**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 이하 산정 생략
- **(보증료 감면)** 탄소감축분야별 감면 적용하되 중복적용 배제하고, 외부 감축기업 및 자체감축기업의 경우, 탄소감축 기여등급에 따른 탄소 스프레드를 적용하여 보증료 감면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	외부감축기업, 자체감축기업		
	탄소감축 기여등급(CR등급)*		
	CR10등급	CR5~CR9등급	CR1~CR4등급
△0.2%p	△0.2%p	△0.3%p	△0.4%p

- **(보증비율)** 탄소가치 산출 여부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 적용(90%~95%)

탄소가치 미산출	탄소가치 산출(표준·심층평가)
90%	95%

□ **(지원계획)** '24년도 신규공급계획 6,000억원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및 영업점

1 「혁신벤처기업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사업개요) 정부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미래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
- (지원내용) 벤처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을 “우수혁신 벤처기업”과 “유망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우수혁신 벤처기업	유망벤처기업
벤처유형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개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수출액, 연구개발비 중 1개 이상이 평균 10% 이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ep-Tech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출, R&D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보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5년간)
보증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p 차감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0.4%p 차감 (5년간)
총량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0억원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혹은 인근 영업점 문의

2

「녹색벤처기업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사업개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신성장동력인 녹색벤처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지원내용) 기후테크* 기업의 자금 용도에 따라 “기후테크 성장보증” 과 “기후테크 개발자금 보증”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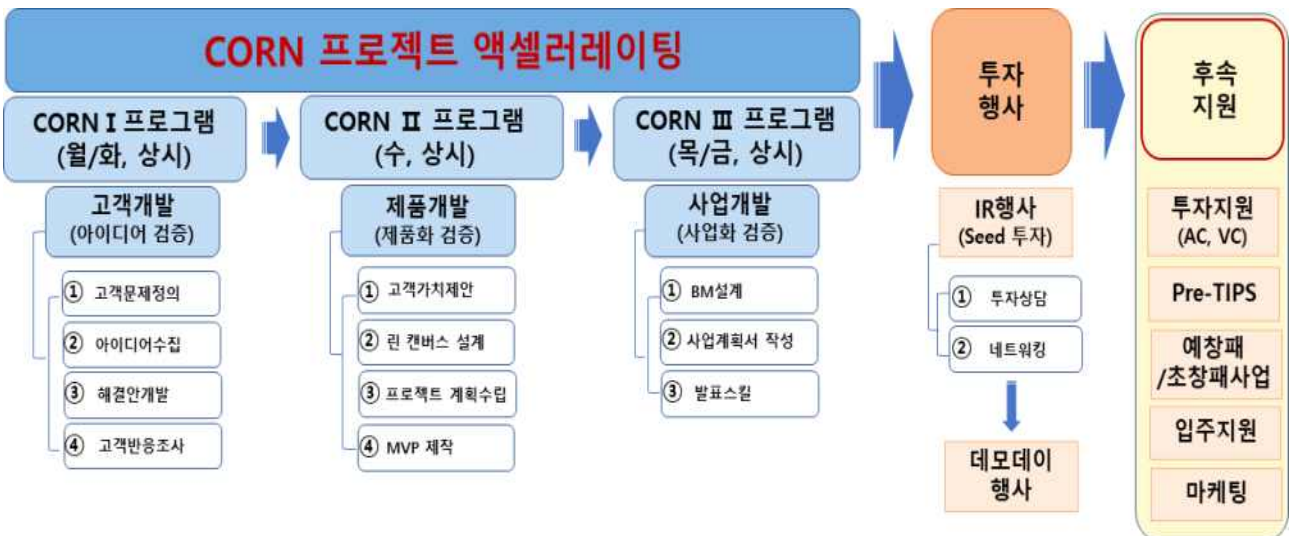
*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기술

구 분	기후테크 성장보증	기후테크 개발자금 보증
대상채무	▪ 매출 증대, 사업 확장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 기후테크 분야 R&D에 필요한 운전자금
기업당한도	▪ 3억원	▪ 1억원
보증비율	▪ 90%	▪ 100% (최초 3년, 이후 90% 적용)
보증료율	0.4%p 차감	
총량한도	▪ 800억원	▪ 200억원

- (문 의 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혹은 인근 영업점 문의

- (사업목적)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 (모집대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원혜택) 아이디어 검증, 전문가 멘토링, 투자행사 참여 등
- (지원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검증, 제품 및 사업개발 창업역량강화
 - CORN I 프로젝트 : 고객개발(아이디어 검증)
 - CORN II 프로젝트 : 제품개발(최소기능제품 확인)
 - CORN III 프로젝트 : 사업개발(사업화 검증)
- (신청기한) 2024. 1. ~ 12. (※기간 내 상시 모집)

□ (운영절차)



- (세부내용) CORN 프로젝트 홈페이지 참조 📄 www.kcorn.kr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션본부 (☎055-291-9314)
- (참고사항) 기관·기업·학교 등에서 요청 시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CORN 프로젝트” 운영 가능

2

2024 한일 K-Tech 파트너링 참가기업 모집

- (사업목적)** 일본 아이치현 Station Ai 연계 K-Tech 파트너링 참가지원을 통해 현지 파트너기업 발굴 기회 제공
- (모집대상)** 도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영어 또는 일본어 가능기업 우대
*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17. 10. 23. 이후
- (지원분야)** 탄소중립(GX), DX, 모빌리티 등 사회적 과제해결 관련
- (지원내용)** 피치덱 일본어 번역, 멘토링, 항공 및 숙박비 등
- (선정규모)** 3개사 내외
- (모집기간)** 2024.10.24.(목)~ 11.4.(월), 18시까지
- (추진절차)**

① 요건검토	② 시장진출 가능성평가	③ 최종 선정
자격 기준 검토 및 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신청서 및 기업/제품 소개서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검토 진행	선정 확정 및 통보
~ '24. 11. 5.	~ '24. 11. 7.	'24. 11. 8.

- (문의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운영팀 (☎055-291-9382)
- (참고사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홈페이지 참조
<https://cei.creativekorea.or.kr/gyeongnam/>

구분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필수	① 참가기업 신청서	[붙임1] 양식	담당자 이메일 제출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유시	③ 기업 소개/제품 소개서 (영문 또는 현지어)	수출 준비도 평가 및 현지 바이어 사전 정보 제공, 부스 개설을 위한 외국어 카달로그 보유 여부 확인	

※ **'제출완료' 후 접수확인 전화 필수**

※ **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보완 요청 예정

1 | **경남형 강한 소공인·소기업 성장지원 특별보증**

- (사업개요)** 코로나 이후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도내 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한 유동성공급으로 금융부담 완화 및 성장지원 도모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서 제조업을 영위 중인 업력 1년 이상으로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소기업
 -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후 가동(영업)중
 - ②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
- (지원규모)** 300억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 건 3억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 이내 (1년 단위 연장가능)
 - 보증료율 : 연 1 (고정, 5년간)
- (신청기한)**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2

서민물가 안정화 및 장수기업 특별보증

- (사업개요)**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로 서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지원 도모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① 신용보증신청 신청일(상담일기준) 현재 업력이 7년 이상인 업체
 - ② 행정안전부 선정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체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 건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1년 단위 연장가능)
- (신청기한)** 2024. 7. 1.(월) ~ 별도 통지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

등 자료는 무역보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완전성 및 법률적 책임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K-SURE 앞 구체적 문의 없이, 이 자료의 내용만을 적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실시

- (사업개요)** 공사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高한도· 低금리 무역금융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신청자격)** 은행 추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공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내용)** [공사] 한도 우대(2배 이내), 보증비율 상향(95%), 보험(증)료 할인(20%)
[은행]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율 및 환가료율 우대 등
- (관련기관)** 하나, 우리, 신한, 농협, 국민은행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2 수출 초보기업 지원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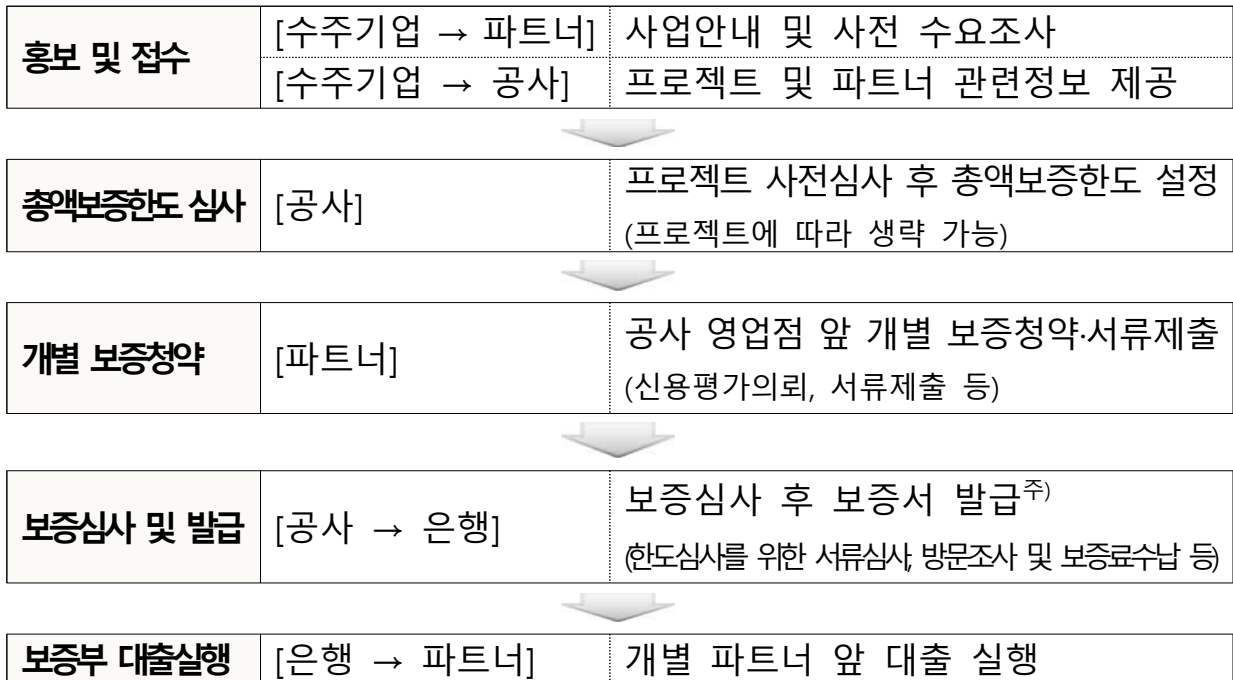
- (사업개요)** 수출 초보기업 중점육성 및 수출역량 강화, 수출창업 및 벤처활성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한 보증·보험 한도 확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신청자격)**
 - 산업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당해연도 참여 기업
 - 수출실적 U\$100만 이하 기업(최근 1년 또는 전년도)
- (지원내용)**
 - 수출이행자금(선적전 보증)·수출채권유동화(선적후, 매입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 수입자 신용조사보고서 무료 제공(5회)
- (기타사항)** 공사 내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 가능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3 수출이행자금 기존 보증 건 무감액 연장 실시

-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침 종료 이후, 연착륙을 위하여 2025년 9월까지 무감액 연장 실시
- (신청자격)** 기존에 공사 선적전 보증서를 이용 중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수출이행자금 지원(기존 선적전 보증) 무감액 기간연장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4 방산 협력사를 위한 수출파트너보증제도 운영

- (사업개요)** 방산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참여 협력사(파트너) 앞 다수의 개별보증을 신속·간편 제공
* 단, 프로젝트에 따라 사전 심사(총액보증한도 책정) 생략 가능
- (신청자격)** 우량 수주기업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
- (지원내용)**
 - (보증한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정한도 산출, 최대 30억원(중견 40억원)
 - (심사 간소화) 기존 보증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및 심사항목 일부를 생략·간소화하고, 본점의 별도 심사 없이 영업점에서 신속 발급
 - (심사 프로세스)



주) 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험(보증)금지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 (신청기한)** 수출 프로젝트 심사 이후 상시 운영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 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5 | 환변동보험제도 운영

- (사업개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
- (신청자격)** 수출 및 수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년 6개월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
 -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국내기업
 - (대상통화) USD, JPY, EUR, CNY
 - (보험한도) 수출입실적, 기업신용도 및 실행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책정

【 환변동보험의 종류 】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형 선물환	수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
	원자재수입거래 (수출원자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상승 : 공사→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 환율하락 : 보험계약자→공사에 이익금 납부
옵션형 (이익금 납부 의무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통화당* 80원까지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 * JPY는 100엔당
	완전보장 옵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하락 : 환차손 전액 보험금 지급 ■ 환율상승 : 이익금 납부 면제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6**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제도 운영**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1개의 보증서로 다수 수입자와의 거래 모두 담보
 - (보증대상)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대상거래)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외환 180일 이내 대출
 - (보증한도) 최대 U\$700만(U\$10만 이내 책정 시 간편 심사)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보증료 지원)** 하나, 국민, 우리, 신한,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추천기업 앞 포괄매입 보증료 지원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원부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입자금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 정부선정 소부장, 뿌리산업, 방위산업 관련 제조, 혁신제조업체
- **(지원내용)**
 - (제도특징) 보험계약기간(1년)내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가능
 - (보험대상) 공사 등급 E이상 제조기업
 -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자금 대출계약
 - (보험한도) 수입실적, 재무자료 등 공사 내부규정 감안 산출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험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사업개요)** 별도의 수출통지 절차나 수입자 신용조사 없이 보험계약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비대면 간편 보험제도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비대면가입 및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으로 신속한 가입
 - (보험대상)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 G급 제외)기업 중 직수출 실적 U\$50백만 이하 기업
 -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거래
 - (보험한도) 개별수입자 당 최대한도 U\$10만(기업 최대 한도 U\$20만)

* 기존 공사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와 중복이용 제한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9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제도 운영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보증부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은 공사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서 담보로 대출 실행
- (신청자격)**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도특징) 은행 플랫폼 및 대외정보연계망 활용을 통한 보증심사 자동화
 - (지원종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지원대상)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급 B+이상 기업 중 매출액 1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 및 수출실적 U\$1만 이상 U\$200만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보증한도) 5천만원 또는 1억원(KoDATA등급이 BB+이상인 경우 1억원 선택 가능)
 -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금융기관 등 연체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 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 보증취급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청기한)** 상시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사업개요)** 지자체 지원을 통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및 단체 보험 운영
- **(신청자격)** 경남지역 내 본사 또는 지사(공장)을 두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24년도 지자체 지원예산 확보를 통한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단체보험 운영) 경남도청 등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최대 U\$5만 이내에서 보상
 - * 보험료 지원예산 및 단체보험 보상한도는 지자체별로 상이함
 - ** 당해 연도 보험료지원사업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담당자 앞 개별연락
-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0)

- (사업개요)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기업에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배양과 FTA 활용 능력 제고
- (신청자격) 대기업을 제외한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 직전 2년 내('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타부처 유사사업 포함)
- ※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 ①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 ②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 ③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의 경우 허용
- (지원규모) 연간 1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4개 + 추가 2개)	6~10일 (필수 6+선택 4일)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컨설팅 (품목수 2개 + 추가 1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품목수 2개 + 추가 1개)	2~5일 (필수2일+선택3일)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외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외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기업 분담금	<p>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3)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p> <p>①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p> <p>②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10%</p> <p>③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20%</p> <p>④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30%</p> <p>⑤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40%</p> <p>⑥ 1,500억원 이상 : (컨설팅 총액-200만원)의 50%</p> <p>※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p>
-------------------	---

- (신청기한)** 2024년 4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세부내용)**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Click\)](#)
- (문의처)**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박예진 원산지관리사
(TEL. 055-210-3048/ E mail. gnfta@cwcci.or.kr)

1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 (사업내용) 기업승계 관련 일반상담 및 주식가치평가 제공

구분	일반상담	주식가치평가
지원 대상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승계 진행(희망) 비상장 중소기업
주요 내용	1.세무 가업승계 지원세제 전반에 관한 설명 및 기본 요건 충족여부 진단 등 2.법률 가업승계 관련 법률 상담(유류분 소송 등)	주식가치 평가 및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른 세부담액 추정 등
제출 서류	상담·자문 내용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명세리스트, 부동산등기부등본, 정관 등

* 주식가치 평가의 경우, 적절한 주식의 상속 및 증여가액 산정 등의 참고자료로써 가업상속공제 등의 신고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참고자료 용도 외 활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상담방법)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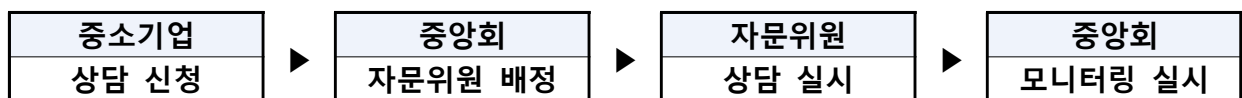
- (일반상담) 온라인·전화·현장(자문위원이 기업 방문, 업체별 연 3회 이내) 상담
- (주식가치평가) 현장(자문위원이 기업 방문, 업체별 1회/3년에 한하여 지원) 상담

□ (신청·접수) 상시 접수 * 예산 소진시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상담신청 → 자문위원 매칭
- 전 화 : 기업 기본 정보 및 자문 요청내용 확인 후 자문위원 매칭



□ (자문절차)



□ (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6~8)

2 | 2024 차세대CEO스쿨 성장과정 교육

- (대 상)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예비 CEO
- (내 용) 트렌드 코리아 2025 강의 등
- (일 시) '24.11.27(수) 14:00 ~ 18:00 (만찬 예정)
- (장 소)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 대회의실(3F, 주차가능)
- (참가비용) 60,000원(교육신청 후 납부안내 별도 공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신청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지원실(sbhrdas@kbiz.or.kr, 02-2124-3302~3)

3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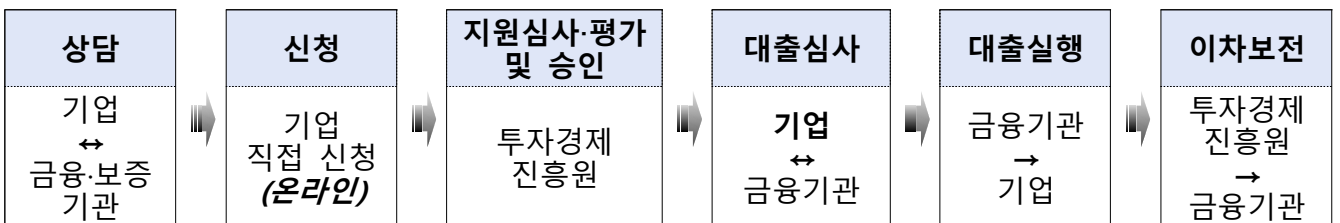
- (제도개요)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사망,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 은퇴 시 생활안정 등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 무등록 소상공인
-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부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부금납입)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 자동이체
- (주요혜택)
 - 年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법에 의한 수급권 보호)
 - 납부 부금 내 일반대출, 무이자대출(의료·재해 등) 가능
 - ※ 재가입 장려금 5만원 지원(공제금 수령 및 '23.10.1 이후 재가입한 고객 중 6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자에 한해 7회차 납부시 지원)
- (가입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문의(☎055-281-2305)

1 |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 **(사업개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시설투자 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우대기업 등 상세 요건은 홈페이지 및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정책자금(11,000억 원) 용자 및 이차보전(0.75~2.0%)

자금구분		용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지원한도
합 계		11,000억원			
일반 자금	경영안정자금	4,600억원	2~3년간	연 1.5~2.0%	업체당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원	5~10년간	연 0.75~2.0%	업체당 20억원
특별자금(경영·시설)		2,900억원	2~10년간	연 1.0~2.0%	업체당 5~50억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은행 협조 용자)에 대한 이차보전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대출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함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 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 **(지원절차)**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은 평가에 따른 고득점 순 지원,

특별자금은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순 지원

□ (신청기간)

- 경영안정자금 : 분기별 접수(1월, 4월, 7월, 10월)
- 시설설비자금 : 반기별 접수(상반기 및 하반기)
- 특 별 자 금 : 연간 접수

※ 각 항목별 접수가능 여부의 경우 홈페이지>신청하기 란을 통해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되었을 경우 '접수 마감' 표시됨)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ibamoney.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각 자금별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필히 참조

□ (세부내용)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 (문 의 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
(055-230-2901~4)

□ (사업개요)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 'e경남몰' 운영

□ (사업내용)

- 온라인 시장(e커머스)의 확대 및 유통업계의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
- 도내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 기회 제공

□ (사업계획)

- (입점업체 상시모집)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품, 지역특산물, 지역 문화체험상품 등의 제품
 - 1차 농·축·수·임산물 :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 가공품 : 경상남도 산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 (입점 혜택) 상세페이지(1개 제품) 무료제작, 판매수수료 무료
- (홍보·마케팅 활성화) 각종 행사 및 홍보 마케팅(명절 기획전, 특판전 등)을 통하여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적으로 지원
- (정기구독 서비스) 구독경제(정기배송 주문) 카테고리 개설 및 할인 판매를 통해 입점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자 함

□ (세부내용) [e경남몰 홈페이지](#)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2팀(055-230-2906~7)

3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e경남몰) 지원 사업

- (사업개요)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몰 입점 및 컨설팅·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e경남몰 입점 요건에 부합하는 경남도내 소재 소상공인

e경남몰 입점 가능 품목 및 입점자 자격

<입점 가능 품목>

1. 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 가. 1차 농·수·축·임산물 :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 나. 가공품 : 경상남도산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10%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
2.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이로로, 안심농,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 추천상품
3.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 및 지역문화체험상품
4.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입점업체 생산(제조·가공)품

<입점자 자격요건>

- 입점 가능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생산자, 농어업경영체, 제조·가공업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경상남도에 사업장(본사 및 공장)이 있어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단체)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안심농 이로로 상품이거나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의 e경남몰 입점추천을 받아야 한다.
 4.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허가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등의 경우 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필수

- (지원규모) 소상공인업체 110개점 내외
- (지원내용)
 - 온라인몰(e경남몰) 입점 및 초기 마케팅(상품 상세페이지 등) 관련 컨설팅
 - e경남몰 입점 : e경남몰 입점절차 및 과정 수행(서류 및 등록)
 - e경남몰 입점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마케팅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기한)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참조](#)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2팀(055-230-2907)

4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사업

- (사업개요)** 도내 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증진, 노동법 교육을 통한 노동법 준수 문화 조성
- (사업내용)**
 - 도내 노동자 및 50인 미만 사업장* 및 기관 등 대상
 - * 근로시간제 컨설팅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
 - 사업분야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및 진정서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인 선임 등
 - 노무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근로시간제 컨설팅 등
 - 노동법 교육 등 지원 : 필수노동법, 최신판례, 질의응답 등 노동법 교육 지원
- (신청방법)**
 - ①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접수
 - ② 신청자와 담당 도민노무사 매칭
 - ③ 일정 협의 후 상담·교육·컨설팅 실시
- (세부내용)** 신청서 서식 [모음](#)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055-230-2823)

5**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 **(사업개요)**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제조산업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숙련인력 확보,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업 : 경상남도내 소재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종류>

- ① 상생협력 협약 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분류코드 무관) 이거나
- ②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항공우주제조산업(C31311, C31312, C31321, C31322) 인 사업체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 경상남도내 항공우주제조산업 사업체 중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24. 3. 11. 이후 취업자

□ **(사업내용)**

○ 사업주 지원 : 항공산업 일도약장려금, 항공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항공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 근로자 지원 : 일채움지원금,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 채용예정자 훈련 장려금

※ 각 사업 내용 관련 상세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 필수 참조

□ **(신청기간)** 2024. 7. 22.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 항공산업 도약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 전 각 세부사업 담당자 이메일 통해 접수

□ **(세부내용)** 사업 공고문

□ **(문의처)**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및 권역별 항공산업 도약센터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 (☎ 055-230-2822)

○ 동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230-2911/pys4877@giba.or.kr)

○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 (☎ 055-760-6701/kcfly8219@nate.com)

